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 12. 18.(목) 10:00~

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4 ~ 9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	3
2014 ~ 92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6
2014 ~ 93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8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1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2. 0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의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 위탁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7조)
- 안전도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1조)
-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진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여 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제3조 ~ 8조에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책무, 사업의 범위와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과 안전도시 협의회의 설치 등을 명시하였으며,
 - 제9조 ~ 12조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 10조와 11조에 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음.
- 이와 같이 군민 모두가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1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2. 08.

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폐지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이용객의 불만민원 급증,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징수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등으로 '09.01.01부터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므로 이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폐지 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 오염방지를 위해 공포(1990년 3월 26일)하여 시행 왔으나
그 이후 2004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징수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의 사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1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2. 0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마을만들기와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제고와
-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향후 정책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다른 법령 등과 관계(안 제1조 ~ 제5조)
- (2)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3)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신청, 평가·포상(안 제7조 ~ 제9조)
- (4) 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17조)
 -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의·자문, 주민 전문가 등 20명 이내 구성

- (5)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8조 ~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 6조에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 7조~8조에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규정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 제10조~17조에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 제 18조~20조에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현실적으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것을 볼 때,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한 조례로서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